

##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

### 1. 관련근거

#### 가. 항공안전 의무보고

「항공안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
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134조

#### 나. 항공안전 자율보고

법 제61조 및 규칙 제135조

### 2. 보고사항

#### 가. 항공안전 의무보고

- 1)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
- 2) 법 제2조제9호, 규칙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항공기준사고
- 3) 법 제59조, 규칙 제134조 및 별표 20의2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 
항공안전장애

#### 나. 항공안전 자율보고

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(이하 “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”라 한다)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

### 3. 보고 대상자

#### 가. 항공안전 의무보고

항공기사고·항공기준사고·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다음의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

- 1) 항공기 기장(항공기 기장이 보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말한다)
- 2) 항공정비사(항공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정비사가 소속된 기관·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)
- 3) 항공교통관제사(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을 말한다)
- 4)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라 공항시설을 관리·유지하는 자
- 5)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·관리하는 자
- 6)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
- 7)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

가) 항공기 중량 및 균형관리를 위한 화물 등의 탑재관리, 지상에서 항공기에 대한 동력지원

나) 지상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항공기 유도

#### 나. 항공안전 자율보고

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(항공종사자 등 관계인, 항공기탑승·공항이용 등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등 전

국민을 말한다)

#### 4. 보고시기

##### 가. 항공안전 의무보고

1)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: 즉시

2) 항공안전장애

가) 규칙 **별표 20의2**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: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 (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). 다만, 제6호가목,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

나) 규칙 **별표 20의2** 제5호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: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. 다만, 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.

##### 나. 항공안전 자율보고

**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**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**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** 경우 언제든지 보고. 다만, 법 제61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는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여야 한다.

#### 5. 보고기관

| 구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보고기관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항공안전<br>의무보고 | 항공기사고<br>및<br>항공기준사고 | 국토교통부<br>항공안전<br>정책과       | 주간<br>(09시~18시)          | TEL: 044)201-4682<br>FAX: 044)201-5628<br>E-mail: fsdiv01@korea.kr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야간<br>(18시~09시)<br>및 공휴일 | TEL: 044)201-4672(당직실)<br>FAX: 044)201-5700<br>E-mail: fsdiv01@korea.kr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항공·철도<br>사고조사위원회<br>(24시간)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TEL: 044)201-5447(세종)<br>02)2621-4103(신속대응팀)<br>FAX: 044)868-2406<br>E-mail: araub@korea.kr | 30121<br>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232<br>세종비즈니스센터 A-604<br>항공·철도사고 조사위원회 |
|              | 항공안전<br>장애           | 국토교통부<br>항공안전<br>정책과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TEL: 044)201-4682(24시간)<br>FAX: 044)201-5628<br>E-mail: fsdiv01@korea.kr                    |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               |
| 항공안전<br>자율보고 |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교통<br>안전공단<br>항공안전처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TEL: 054)459-7391<br>FAX: 054)459-7149<br>E-mail: kairs@kotsa.or.kr                         | 39660<br>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<br>17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<br>안전처            |

※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는 「항공·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☎ 044-201-5447, 02-2621-4103)에도 함께 통보

## 6. 보고방법

### 가. 항공안전 의무보고

- 1)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는 보고기관에 우선 전화로 보고
- 2) 전자적인 보고방법: 인터넷 웹사이트 <http://www.esky.go.kr>에

접속하여 항공안전의무보고에 로그인 후 입력

※ 웹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보고내용 입력 → 제출

- 3) 서면 보고방법: 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에 따라 팩스(FAX) 또는 전자·비전자 우편으로 보고

## 나. 항공안전 자율보고

### 1) 전자적인 보고방법

가)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: 인터넷 웹사이트 [www.airsafety.or.kr](http://www.airsafety.or.kr)에 접속하여 보고

나) 항공교통이용자 등 일반국민 : 모바일 웹페이지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[www.whistle.or.kr](http://www.whistle.or.kr)에 접속하여 신고

2) 서면 보고방법 : 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에 따라 팩스(FAX) 또는 전자·비전자 우편으로 보고

다. 그 밖에 기타 세부적인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

1) 항공안전 의무보고 :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(전화 : 044) 201-4682)

2) 항공안전 자율보고 :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(전화 : 054) 459-7391)

## 7. 재검토기한

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